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 . . . (제 회)	

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인사혁신처 소관)
제출연월일	20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재난·안전 업무 담당 공무원의 높은 책임 부담, 잦은 비상근무 등 열악한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재난·안전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, 우수인력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가점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재난·안전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반드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함(안 제27조제1항 일부개정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별도합의 필요 없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- 2) 입법예고(2025. 12. 31. ~ 2026. 02. 09.) 예정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 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1항 단서 중 “근무한”을 “근무한 사람 및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 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 중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근무한”으로, “가점”을 “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7조(가점평정) ① 소속 장관은 제29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직무 관련 자격증의 소지 여부, 특정 직위 및 특수지역에서의 근무경력, 근무성적평가 대상 기간 중의 업무혁신 등 공적사항, 그 밖에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5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. 다만, 「공무원임용령」 제43조의 3제3항에 따른 전문직위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.	제27조(가점평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근무한 사람 및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 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 중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근무한 ---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-----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	
연 락 처	(044) 201 - 8479